

보도시점 2026. 8. 26.(수) 11:00
2026. 8. 27.(목) 조간

배포 2026. 8. 26.(수) 06:00

농안법 시행,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가 경영안정 기반 강화

- 주요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강화 및 생산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농산물 가격 하락 폭이 큰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9월 초)를 거쳐 대상품목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파종·정식 단계부터 수급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가격 하락 폭이 큰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등 수급 정책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정부·생산자단체가 함께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요·공급 전망, 재배면적 목표 관리, 안정 생산·공급 지원방안 등을 담은 농산물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문위원회로 운영해 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하고, 설치·운영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한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요 수급정책의 실행력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 수립, 계약재배 시 손실 지원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농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국민 식생활에 밀접한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는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학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 의견 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 사항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품목과 차액지급 비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농산물가격안정제 세부 운영방안은 이후 별도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위원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하고, 품목별 생산자단체 3분의 1 이상 포함(총 15명)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농수산물유통안정법’ 개정 주요 내용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배민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양유진	(044-201-2244)



참고

‘농수산물유통안정법’ 개정 주요 내용

법 개정사항		위임사항	
		시행령	시행규칙
수급 계획	○ 농수산물수급계획 수립 의무화(제5조) * 시·도 수급관리계획 → 농수산물수급계획 → 시·도 실행계획 순으로 계획 수립·이행 ** 각 계획 수립 시 시·도는 주산지협의회와 농식품부는 중앙협의회(시·도 계획 조정) 및 수급위(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마련	○ 주산지협의회가 없는 품목의 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가 논의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의 범위	
안정 생산공급 수급관리 센터	○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 도입(제5조의2) ○ 시·도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5조의3)	○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 사항	
수급위, 무역정책 심의회	○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제5조의7, 제5조의8) ○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설치(제15조의2)		○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계약 거래	○ 계약생산·출하 등을 계약거래로 정의(제6조) ○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및 손실 등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제6조)	○ 계약거래 농산물에 대한 지원 사항 범위	
비축 관리	○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수탁사업자)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영계획 수립 의무화(제13조의2) * 비축용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판매실적을 수탁사업자에게 보고 ** 수탁사업자는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비축사업의 성과 점검하고, 의견수렴 후 계획 수립		○ 수탁사업자 등의 보고 시기 및 내용, 성과점검, 의견수렴 등의 기준·절차
가격 안정제	○ 가격안정제(기준가격보다 평균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 지급) 도입(제16조의2)	○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차액 지급비율 조정 관련 이행사항 등	○ 평균가격을 정하는 방법·기준
가격안정 심의위	○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품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제16조의4)	○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 타 (하위법령 미위임)	○ 예시 가격 결정, 비축용 농산물 수입 등 수급위 심의사항 포함(제8조, 제15조), 선제적 수급조절 노력 의무화(제9조), 소비분석 등 농업관측 확대(제5조의4) 등		